

[별표 1] <개정 2008.2.29>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의 범위(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협 의 대 상 지 역 등
1. 보전목적 및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 등의 지정 또는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목적 및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 또는 결정되는 지역 등
2. 보전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	「문화재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사적·명승·천연기념물,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지정 문화재 및 「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특별보존지구·역사문화환경지구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 및 제4조에 따른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예정지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 지역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 또는 결정되는 지역 등
3.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와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농어촌정비법」 제80조에 따른 한계농지정비지구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지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문화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석탄산업법」 제39조의8에 따른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도권신공항건설예정지역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예정지역
「오지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개발지구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유통단지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9조 및 제26조의3에 따른 광역개발권역·개발촉진지구 및 특정지역과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 등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구역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공항개발예정구역으로 고시한 지역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 및 허가와 관련된 지역 등 및 동법 제43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 또는 결정되는 지역 등